

#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90
----------	-----

2019년 9월 2일  
교육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8월 7일, 김용연 의원 외 11명
2.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9년 9월 2일 상정·수정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용연 의원)

### 1. 제안이유

- 최근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밀집 지역 변화 등으로 폐교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폐교 재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 이에 따라 폐교재산 활용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 또는 시정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내 교육 및 사회·문화·복지의 기회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교육용시설, 사회·문화·복지시설 등으로의 대부 또는 매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공유재산의 관리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교육감의 책무 및 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폐교 활용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4조)
- 나.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
- 다.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9조)
- 라. 폐교재산 관리의 위탁운영 및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
- 마. 폐교재산의 대부·매각 및 영구시설물의 축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자문 및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안 제15조)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8월 7일 김용연 의원 외 11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890호로 공동 발의되어 2019년 8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소재 공립학교 중 학생 수 감소 및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폐교의 시설과 재산에 대하여 활용계획의 수립,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조금 지원 및 대부·매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저출산 노령화 사회로 인해 학생수가 감소하고, 택지개발 등에 따른 기존 학교의 이전 및 학교 통폐합 등으로 인해 그동안 지역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하던 각급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역할이 어려워져 폐교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폐교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에 해당되어 처분이나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바, 현재 교육부 통계<sup>1)</sup>에 따르면 전국 3,784교의 폐교 중 매각을 제외한 1,409교의 폐교 가운데 28%인 395교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부는 이처럼 증가하는 폐교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폐교정보(<http://www.eduinfo.go.kr/portal/theme/abolSchStatusPage.do#none>), 2019.3.1.기준.

2002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이라 함)을 제정하였고,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예술 등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재개교의 가능성이 없는 폐교재산의 경우에는 민간경제활동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서울시의 경우 학교부지 매각에 따른 실질적인 폐교는 지난 1999년에 발생한 오곡국민학교 1교<sup>2)</sup>에 불과하고, 최근 10년간 폐교 처분이 내려진 5개교(사립학교 포함)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이나 학교급의 변경 또는 이전 개교의 형태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폐교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표-1] 최근 10년간 폐교 학교 현황

연번	학교급	교명	위치	설립별	폐교일자	폐교사유
1	중	해성여자중학교	동대문구 전농동 (해성여고 내)	사립	2010.2.28.	해성여중을 해성여고로 개편 신설
2	고등기술(고)	정화미용예술학교	중구 남산동 (정화예술대 내)	사립	2012.6.29.	전공과 과정이 정화예술대학으로 전환되어 폐지
3	초	서울흥일초등학교	금천구 시흥동 (현 한울중)	공립	2015.2.28.	신흥초와 통합,(구)흥일초에는 한울중 이전 개교
4	초	알로이시오초등학교	은평구 응암동 (현 꿈나무마을)	사립	2015.2.28.	부모 이탈 보호대상아동수 급감, 시설보호대상 학교 운영 불필요
5	특수	서울명수학교	성북구 성북동 (현 서울다원학교)	사립	2015.8.31.	중증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긴급 보호를 위하여 사립 폐교 및 공립학교 신설

- 다만 현재 가칭)마곡2중 신설을 위한 염강초<sup>3)</sup>, 공진중<sup>4)</sup>의 경우에는

2) 서울시교육청 매각 폐교 : 1건

소관	폐교명	폐교년도	주소	매각일자	매각금액(원)	매수자	매수사유
강서양천	오곡국민학교	1999	강서구 오곡동 1555	2003.8.12	2,728,284,800	영구아트심형래	문화시설 활용

학생배치계획상 폐교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활용 등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아직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한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검토하고 있지 않는데, 폐교재산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 방안 마련과 구체적 활용계획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에 있어 교육감에게 보다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활용을 위한 실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폐교재산활용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및 위탁·운영 등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면에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sup>5)</sup> 등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조례 구

3) 2019~2023학년도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서울시교육청, 2018.12.)

4) 2019~2023학년도 중학교 학생배치계획(서울시교육청, 2018.12.)

5)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18.6.

성 측면에 있어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조례 제명과 목적에 관한 의견(안 제1조)

- 동 「서울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에 따르면 폐교재산에 대한 건전한 활용 촉진으로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의 확충과 소득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조례안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령체계상 조례의 제명은 조례가 규율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띠어야 하며<sup>6)</sup>, 조례의 목적규정은 일반 주민으로 하여금 자치법규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에 비추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조문의 구체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의 기능<sup>7)</sup>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안의 제명은 폐교재산의 관리·운영 주체인 교육감에게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관리·운영 방안 마련이 아닌 별도의 지원을 위한 사항들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 그러나 동 조례안은 폐교재산을 위한 지원 방안이 아닌 폐교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례안의 목적도 폐교재산의 관리를 위한 활용 촉진에 관한 것인바,  
  
동 조례의 제명은 안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정 취지 및 조례안 내용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되는 조례 제명으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폐교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6) 법제처 의견 13-0291 참조

7)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76~p.77 참고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조례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1282. 2019.8.21.)

## 2)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안 제4조)

○ 안 제4조는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안 제1항)과 매년 시행계획(안 제3항)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기본계획의 수립시에는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안 제4항)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안 제4조제4항의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가 「지방자치법」 제2조<sup>8)</sup>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이므로 ‘관계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안 제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와 교육청이 제시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자치단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 제4조제4항의 수정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3)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의견(안 제5조~안 제7조)

○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폐교재산의 활용과 관련된 자문기구로서 폐교재산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자문 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 따라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등 폐교재산 관리·처분 전반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유재산<sup>9)</sup>인 폐교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

8)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9) 「폐교재산법」 제2조(정의)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

조10)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11)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처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12)에 따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실질적으로 동 위원회의 자문 사항 중 공유재산심의회 자문 내용과 중복되는 규정은 안 제5조제2항제4호의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에 불과한바, 동 규정을 삭제한다면 동 위원회의 위법성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된다 할지라도 폐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서울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설치·운영이 폐교재산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과연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통해 얻을

---

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 10)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11)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2.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영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  
6.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7.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일반재산의 신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9.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12)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의문인바, 동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한 안 제5조부터 제7조를 공유재산심의회의와의 중복성을 이유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1282, 2019.8.21.).

#### 4)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견(안 제9조)

- 안 제9조는 폐교재산이 활용될시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장이 보조할 수 있고(안 제1항), 서울시장은 교육청에 폐교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안 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과 구분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교육감과 시·도지사는 각각 소관 사무에 관한 조례안의 제출, 재의요구 및 공포 등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더욱이 법제처는(15-0290.,2015.11.11.) “ 하나의 조례에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소관 사무의 성격에 따라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려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는 상충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조례안에 시장이 행사하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 침해 가능성 및 교육감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려는 상위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9조의 보조금 지급이 서울특별시 소관

조례에 해당하는바,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행정관 리담당관-11282, 2019.8.21.).

#### 5) 위탁·운영 등에 대한 의견(안 제10조~안 제11조)

○ 안 제10조는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폐교 관련 사무를 전 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는 위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의 평가 결과를 재정적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폐교활용법에서는 폐교재산의 관리나 운영을 위한 위 탁·운영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바, 공유재산인 폐교재산의 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sup>13)</sup>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 조의2<sup>14)</sup>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일반 재산인 폐교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위탁을 별도로 규정한 대상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별도의 기관에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 제10조와 안 제11조 및 부칙 안 제2조는 삭제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상위법령 위반을 이유로 안 제10조 및

13)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특 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4) 제4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 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안 제11조에 대한 삭제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 -11282, 2019.8.21.).

#### 6) 기타 조문에 대한 의견

-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는 폐교재산의 대부·매각과 영구시설물의 축조, 공유재산심의회 자문 및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등이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폐교활용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내용을 조례에 규정 한 것입니다.
- 다만 비록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중복 규정하는 것은 입법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으나 폐교재산 관리의 중요성 측면과 주민의 법적 접근성 측면에서 조례상 중복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일부 조문에서 상위법령 제명과 내용의 오프기가 있는바, 이에 대한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요지 : 없음

#### VI. 수정안의 요지 :

- 동 조례안의 제명을 명확히 하고, 동 조례안에 따른 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하며, 심의사항 중 공유재산심의회와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을 삭제함.
- 또한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시장의 보조금 지원 규정과 폐교 재산에 대한 위탁·운영 및 평가 규정을 삭제함.

####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90
----------	-----------

제안연월일 : 2019년 9월 2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 1. 수정이유

- 동 조례안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구인 위원회가 공유재산심의회와 그 기능이 유사하여 법률위반 소지가 있는바, 심의사항 중 일부를 삭제함.
- 또한 시장의 보조금 지원과 폐교재산의 위탁·운영 및 평가 규정이 상 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함.
- 그리고 동 조례안의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제명을 수정하며, 동 조례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및 인용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함(안 제명).
- 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을 삭제함(안 제5조).
- 시장의 보조금 지원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
- 폐교재산의 위탁·운영 및 평가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안 제11조 및 안 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폐교자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들”을 “들을”로 한다.

제14조 중 “제12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b>활용 지원</b>에 관한 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b>폐교재산의</b>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시정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촉진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폐교재산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b>둔다</b>.</p> <p>② (생략)</p> <p>1. ~ 3. (생략)</p> <p><b>4.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 계획</b></p> <p><b>5.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b></p> <p><b>6. 폐교재산 활용 등에 관한 자치구 요구사항 및 여론 동향 분석</b></p> <p><b>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b></p> <p>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략)</p> <p>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 수 있다.</p> <p>⑤ ~ ⑧ (생략)</p> <p><b>제9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b></p>	<p>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b>관리 및 활용</b>에 관한 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b>폐교재산의</b>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시정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촉진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폐교재산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b>둘 수 있다</b>.</p> <p>② (원안과 같음)</p> <p>1. ~ 3. (원안과 같음)</p> <p><b>&lt;삭 제&gt;</b></p> <p><b>4.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b></p> <p><b>5. 폐교재산 활용 등에 관한 자치구 요구사항 및 여론 동향 분석</b></p> <p><b>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b></p> <p>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원안과 같음)</p> <p>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b>들을</b> 수 있다.</p> <p>⑤ ~ ⑧ (원안과 같음)</p> <p><b>&lt;삭 제&gt;</b></p>

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폐교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폐교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 교육감은 제10조에 따른 위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재정적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대부·매각 등) (생략)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생략)

제14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교육감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생략)

제16조(시행규칙) (생략)

부 칙

<삭 제>

<삭 제>

제9조(대부·매각 등) (원안과 같음)

제10조(영구시설물의 축조) (원안과 같음)

제11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교육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원안과 같음)

제13조(시행규칙) (원안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폐교재산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위탁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시정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평생 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교”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재산적 가치의 활용 촉진 및 효율

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5.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
6.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폐교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및 해당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촉진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폐교재산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3.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5. 폐교재산 활용 등에 관한 자치구 요구사항 및 여론 동향 분석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으로 관련 업무담당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폐교재산 활용 촉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폐교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청의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자료수집 및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자문사항과 제5항에 따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⑦ 민간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협의체의 구성·운영)**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교육감, 서울특별시(이하 “시장” 이라 한다), 해당 자치구청장,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9조(대부·매각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중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유상·무상 대부 및 매각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교육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유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